

통 고 서

발신인 강 봉 수(700918-1079534)
평택시 신촌1로 9, 108동 1601호
(칠원동, 평택지체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1단지)
전화: 010-6767-3716

수신인 골드종합건설 주식회사(180111-0455089)
본점: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423-1, 3층(민락동)
√ 받는 곳 : 부산 부산진구 범천로 12번길 13, 11층 1101호(범천
동) 골든팰리스더리치 분양사무실
전화: 051-3315-5343

이 우편물은 2020-08-14
제 3430302003151호에 의하여
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
수원지법평택지원우체국장

대한민국 KOREA

1. 귀사와 발신인은 2020. 8. 9.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974-2 골든팰리스 더 리치 104동 901호(이하 '위 아파트'라고 합니다)에 관하여 매매대금 236,000,000(계약금 15,000,000원)으로 정하여 가계약(이하 '위 가계약'이라고 합니다)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발신인은 백정웅의 계좌(농협은행 352-1534-5123-23)로 1,000,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.
2. 발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귀사의 지분은 5/100에 불과합니다. 귀사가 위 아파트 지분전부(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100분의 95포함)를 처분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3. 귀사는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서류(위임장, 동의서 등)가 있다면 발신인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위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귀사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.

4. 귀사는 빠른 시일 내에 위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서류를 발신인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8. 14.

발신인 강 봉 수

